

A Note on the Draft Amendment of Library Law

圖書館法 改正案에 대한 小考

— 司書養成教育과 資格區分을 中心으로 —

孫 正 駿

(慶北大圖書館學科專講)

1. 序 言

1963年 10月 28日 法律 第1424號로 圖書館法이, 1965年 3月 26日 同法 施行令이, 그리고 1966年 3月23日 同法 施行細則이 公布된 이래, 그러한 法의인 뒷받침으로 우리는 過去 10餘年동안 國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社會從屬機關으로써 그 使命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現代的 概念의 圖書館을 이룩하기 위하여 不斷한 努力を 기울여 왔다, 그 結果量的 面으로나 技術의인 面에 長足의 發展을 이룩해 왔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微視의인 知識情報社會로 變遷해 가고 있는 오늘날 圖書館으로 하여금 그러한 社會에 對處하여 目的指向의in 方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에는 그동안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紙上을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現行法이 지니고 있는 矛盾點이 쳐지 않았다 하겠다.

圖書館이 지니고 있는 社會·文化的 機能과 教育的 機能의 重要性이 認識되어 圖書館法의 制定이 필요시 되었다면 보다 實用的이고 真率적인 법규범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1970年代에 접어 들면서부터 第4次產業인 知識產業, 情報產業의 開發問題가 더욱 高潮화되어 가고 있고, 平生教育·生涯教育論이 대두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그러한 社會構造變化에 適應하여 社會 안의 모든 個人·集團·活動單位들로 하여금 第4次產業開發을 통한 國力培養이라는 共同目標達成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다 強力한 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함은 再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그동안 未備된 狀態였던 圖書館關係法 全面改正의 필요성이 시급히 要請되어 왔던 이때 비록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협회當국이 이의 改正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우리고 있음을 볼때 圖書館人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더불어 改正案을 마련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關係者들

에게도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이 改正案가운데는 좀 더 再考를 요하는 部分들이 있기에 그 중 司書養成教育과 資格區分에 관계되는 問題點들을 가지고 愚見몇 마디를 費力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教授經歷도 짧은 사람이 教育云云한다는 것이 주제넘는 行動인데다 이미 紙上을 통하여 高見들이 제시되었고, 또한 그 改善點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같은 見解를 다시 되풀이하여 提言한다는 것은 오히려 蛇足을 느려놓는 痕이 되지 않을까 주저되나 協會當局의 意見發表要請에 의하여 몇 마디 言及한다.

2. 司書의 区分과 名稱問題

現行 圖書館法에는 司書의 区分을 正司書와 準司書로 하고 있고(第4條) 그 呼稱을 正司書, 準司書, 司書教師로 区分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本法 改正案에서는 司書의 区分을 專門司書, 正司書, 準司書로 3區分하고(第3條) 그 呼稱을 專門司書, 正司書, 準司書, 司書教師의 4區分과 이밖에 館種에 따라서 通稱의인 司書(大學 및 特殊圖書館)와 學校司書(學校)라는 呼稱도 使用되고 있어 多樣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나 이러한 法規上의 資格區分과 呼稱에는 몇 가지 再考되어야 할 点들이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司書의 資格區分을 改正案처럼 3等級으로 할 것이냐 現行法처럼 2等級으로 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둘째는 資格區分에 따른 呼稱을 어떻게 불일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첫째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改正案이 司書의 資格區分을 等級한 것은 時代의인 觀點에서 볼 때 보다 높은

資質을 갖춘 司書들로 하여금 圖書館奉仕의 改善을 도모시켜 보자는 의도로 보아 꽤 意義 있는 提案이라 하겠다. 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社會風潮나 意識構造上으로 볼 때도 階級意識과 官僚主義思想이 뇌리속에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 社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區分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問題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두께번의 呼稱問題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專門司書에 대한 用語問題이다. 우리는 지금 까지 社會的 認識을 促求하고 經營者層을 說得할 때면 專門司書라는 用語를 많이 使用해 왔다. 그러나 改正案에서처럼 단순히 專門司書, 正司書, 準司書로 區分하면 金世翊教授도 이미 指摘한 바와같이(도서관 1976年 6月號) 正司書, 準司書는 非專門司書와 같이 들리기 쉬울 뿐 아니라, 지금까지 社會의으로 認識시켜 온 「專門司書」에 대한 概念에도 混線을 빚기 쉬우며 나아가 우리들 스스로를 格下시키는 감을 준다 하겠다. 물론 여기서 意味하는 專門司書는 大學圖書館基準案에 明示된 것으로 보아 主題別 專門司書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改正案에 제시된 專門司書의 資格具備要件의 內容으로 보아 과연 主題別 專門司書를 意味한다 할 수 있을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大學圖書館만을 위해서 그와같은 資格區分이 필요할까 의문이 된다. 主題別 專門司書란 圖書館의 部署設定의 한 유형으로 셋의 主題別閱覽室制度의 必要性이 時代의in 要請에 따라 高潮化되어 각으로써 생겨난 內容上의 區分이지 어여한 等級을 의미하는 用語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뿐 아니라 專門司書의 資格具備要件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이는 正司書나 準司書처럼 資格取得을 위한 一定한 教育過程을 밟고 되는 것이 아니라 正司書가 一定한 經歷을 쌓고 주어진 研究實績만 있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用語上으로 이들을 구별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筆者の 愚見으로서는 이들이 區分을 「司書」라는 通稱名을 사용하여 內容上의 區分으로 1級司書, 2級司書, 3級司書로 區分하던지, 혹은 一級正司書, 2級正司書, 準司書로 區分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밖에 大學과 特殊圖書館에서 단순히 司書(大學에서는 正司書를 의미하고 있으나 特殊圖書館에서는 아무런 資格區分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 한 곳도 그러한 資格區分에 따라 명확한 名稱을 붙여 놓는 것이妥當하리라 여겨진다.

3. 司書資格 取得을 위한 教育 및 教育機關의 問題

이에 대하여는 專門司書와 正司書 準司書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意見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專門司書의 경우

施行令改正案에서 제시한 專門司書(筆者の 改意案으로는 1級司書)의 資格基準을 보면,

1. 正司書로서 積士이상의 學位를 소지하고 圖書館 實務經歷 6年이상인 者, 2. 正司書로서 圖書館에 관한 研究實績 및 圖書館 實務經歷 10年이상과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3篇이상을 發表한 者로 되어 있다.

이러한 資格基準의 新設은 圖書館奉仕의 質을 높히고, 司書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나아가 改正案 全文에 나타난 內容으로 보아 管理階層을 專門化시킴과 동시에 계속적인 노력과 研究에 의한 專門知識의 幅을 확장시키도록 해보자는 意圖에서는 꽤 意義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正司書資格證 所持者로써 博士學位를 所持한 사람도 6年이상의 實務經歷을 쌓아 專門司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要求가 아닐까 생각된다. 비단 이뿐이 아니라 積·博士學位를 所持했지만 圖書館 實務經歷이 없는 著書學科에서 教授職을 맡는 사람들은 永久히 專門司書의 資格證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는 醫師, 法官, 大學教授가 되는 길보다 어렵고, 英國의 FLA會員이나 博士學位 所持者에 한하는 獨逸의 上級司書가 되는 길보다 어렵다. 國家에서 認定하여 수여해 주는 學位는 그만큼 많은 教育을 받고 所定의 資格을 취득하였으니 社會의 指導者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認定書가 아닌가 차라리 圖書館學이란 技術科學이고 經驗科學의 學問이니 醫師나 法官처럼 修習期間이 필요하다하여 1~2年間을 修習期間으로써 圖書館의 實務經歷이나 研究經歷을 두는 것을 모르겠으나 6年이상의 건 實務經歷만을 둔다는 것은 再考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의 愚見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한다.

1. 「正司書(필자의 改意案으로는 2級司書)로서 積士이상의 學位를 所持하고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2篇이상을 發表한 者」로 하면지, 「正司書(필자의 案은 2級司書)로서 積士이상의 學位를 所持하고 圖書館 實務經歷 또는 研究經歷 1年(혹은 2年) 이상인 者」로 하고,
2. 正司書(필자의 改意案으로는 2級司書)로서 圖書館에 관한 研究實績 및 圖書館 實務經歷 5年以上과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3篇이상을 發表한 者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2) 正司書 및 準司書의 경우

施行令 改正案에서 제시하고 있는 正司書 및 準司書에 대한 資格基準을 보면, 正司書의 경우는 大學 圖書館學科卒業者와 그의 大學卒業者の 경우는 現行法과 同一하고 準司書로서 正司書될 수 있는 資格基準은 司書業務에 4年이상 종사자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20學點이상 또는 320時間의 講習을 이수한 者라하여 現行法보다 實務經歷期間이나 學點 및 講習時間만을 더 늘었을 뿐 그외는 現行法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準司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初級大學卒業者の 경우는 學點數와 時間數를, 高等學校卒業者の 경우는 實務經歷期間만을 더 연장시켰을 뿐 그외는 現行法과 同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正司書 및 準司書에 대한 資格基準問題와 관련하여 먼저 言及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短期講習을 통하여 量產되고 있는 資格證의 問題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館界의 여러사람에 의하여 指摘된 바도 있기 때문에 同一한 意見을 반복해서 퍼력하는 結果가 되겠으나 改正案도 現行法과 大同小異할 뿐 아니라, 改正案 第4條에 보면 「司書의 研修」라 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은…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研修를 실시할 수 있다」고 明文化 해 둠으로써 現行法 第5條의 講習의 研修로 만 바뀌었을 뿐 法의으로는 前과 同一한 有權解釋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몇마디 言及하고자 한다.

講習이란 어디까지나 短期의으로 급하게 소요되는 要員에게 최소한의 教育으로 최소한의 必須要件를 갖추기 위한 一時의이고 過渡期의手段인 것이다. 그러므로 講習이 正規敎育의 代替할 수는 없는 일이며, 正規의 教育에 의하여 目的하는 專門職이 양성될 때는 의해 강습은 中斷되어야 한다 함은 再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圖書館數가 과연 몇個館이나 되고 不足人員數가 몇名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은 司書들이 해마다 필요한 것인지 물고 싶다. 1974年 現在 우리나라 圖書館數 4,079個館의 總職員數는 5,109名으로 그 중 專門職者數가 1,742名, 非專門職者數가 3,367名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76年 現在 아직 卒業生이 없는 大學이나 大學 이외의 養成機關을 제외하고 현재 배출되고 있는 大學院 硕士課程 및 教育大學院 硕士課程 등 6個學科, 4年制大學 4個學科, 初級大學 5個學科만 하더라도 1年에 500餘名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 上記한 非專門職者數를 現在 大學에서 배출되고 있는 司書들로만 交替한다 하더라도 6年이상 결리지 않을 것이며, 專門職對 非專門職의理想的의 比率인 4:6의 觀點에서 본다면 1年半程度, 6:4의 比率이라도 4年이상은 결리지 않을진데 이

태도 短期講習을 통하여서도 資格證을 주어야 할 만큼 生產의 生產이 시급한 狀況에 놓여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問題는 法規의in 規制以前에 우리들 專門人們 스스로가 벌써 양심에 비추어 規制를 했어야 할 문제이며 司書들의 資質向上을 위해서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스스로의 政策이 마련되었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金世翹教授께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教育機關이 염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教育機關도 아닌 機關에서 教育을 實施하여 資格證을 주는 機關이 우리나라내에 또 어디있으며, 320時間 講習, 1年履修, 2年履修, 4年履修가 모두 똑같은 차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모순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微觀的 知識情報社會에서 圖書館이 져야 할 社會의in 責任을 생각하고, 專門職 司書들이 짊어져야 할 時代의in 使命을 생각한다면 司書의 資質向上의 圖謀로부터 圖書館奉仕의 質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다른 專門職처럼 國家考試制에 의한 철저한 資格管理까지도 고려하여야 할段階가 아닌가.

따라서 필자는 上記한 諸點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改正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正司書(필자의 改意案으로는 2級司書)의 경우는 「正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文敎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考試(正司書資格)에 合格하고 文敎部長官으로부터 그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또는 同等以上の 學歷이 있는 者.

2. 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이 대신에 教育機關이라 할 수도 있음)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30學點이상 취득한 者.

3. 準司書로서 司書業務에 5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고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혹은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30學點이상 취득한 者.

여기서 學點數를 30學點이상으로 한 것은 實驗大學制度가 實施됨에 따라 副專攻制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在學中 20~25學點(大學에 따라 學點數 配定이 20~25學點幅內에서 조금씩 다름)의 圖書館學을 이수하는 他科學生들로부터 야기되기 쉬운 問題點들을 解消시키고, 나아가 圖書館學 이외의 卒業者에게 필요한 基本의in 必須學點이라면 4年制大學의 교과과정으로 보아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취득시켜야 되지 않을까 여겨져 제언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準司書(필자의 改意案으로는 3級司書)의

경우, 「準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解當하는 者로서 文敎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考試準司書資格에 合格하고 文敎部長官으로부터 그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初級大學 圖書館學科 卒業者(專門學校 圖書館學科 卒業者 包含)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만으로 制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는 現在 5個의 初大 및 專門學校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수만 하더라도 1년에 300餘名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圖書館의 現實情으로보아 改正案이나 現行法에서와 같은 문호개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料되며 執文中에 圖書館學科卒業者로만 局限시킨 것이다.

이밖에 上記한 바와 같이 教育機關이 아닌 機關에서 教育을 實施한다는 것은 再考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施行令 改正案 第4條에 명시된 國立中央圖書館에 의한 司書의研修實施 條項은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한다.

第4條 (司書의 再教育)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혹은 教育기관)에서는 다른 圖書館으로부터 司書에 대한 再education을 의뢰받아 그 education을 實施할 수 있다. 且하고 아울러 母法 改正案 第11條 5號에 明示된 「司書의 研究」條項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國家考試制를 採擇할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諸事項에 대한 條文의 新設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結語(修正案)

이상과 같이 司書養成教育 및 資格區分에 관연된 圖書館法과 그 行令의 改正案 條文에 대한 필자의 小見 몇 가지를 들어 보았다.

아무튼 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人의 權益을 옹호할 수 있는 法改正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람과 동시에 이 改正案 마련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關係者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필자의 改意案(修正案)만을 條文別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法施行令 改正案 중,

第3條 (司書의 區分과 資格) ①法 第5條의 ……司書의 區分은 1級司書, 2級司書, 3級司書로 한다(※그렇지 않으면 1級正司書, 2級正司書, 準司書로도 할 수 있다)

②1級司書(※혹은 1級正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文敎部長官으로부터 그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2級司書(※혹은 2級正司書)로서 碩士이상의 學位를 소지하고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2篇이상을 發表한 者(※그렇지 않으면 第2案으로 「…學位를 소지하고 圖書館 實務經歷 또는 研究經歷 1年(혹은 2年) 이상인 者」로 하면지)

2. 2級司書(혹은 2級正司書)로서 …5年 이상과 圖書館學에 관한 論文 3篇이상을 發表한 者.

③ 2級司書(※혹은 2級正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 2級司書資格 國家試驗에 合格하고… 그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現行法 第4條 2項 1號의 规定과 同一)

2. 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혹은 教育機關이라는 用語를 사용할 수 있음)에서 … 30學點 이상 취득한 者.

3. 3級司書(※혹은 準司書)로서 司書業務에 5年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혹은 教育機關)에서 …30學點 이상 취득한 者.

④ 3級司書(※혹은 測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 3級司書(※혹은 準司書) 資格 國家試驗에 合格하고…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初級大學 圖書館學科 卒業者(專門學校 圖書館學科 卒業者 包含)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 (改正案 1號, 2號는 刪除)

⑤ 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한 大學(※혹은 教育機關)의 지정과 圖書館學에 관한 教育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定하다.

第4條 (司書의 再education)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혹은 教育機關)에서는 다른 圖書館으로부터 司書에 대한 再education을 의뢰받아 그 education을 實施할 수 있다. 圖書館法 改正案 中,

第11條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은 …管掌한다.

(5號 司書의 研究는 刪除)

이밖에 國家考試制의 新設에 따른 諸事項에 대한 條文의 新設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독서하는 생활속에

밟아 오는 우리 사회

독서 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